

제 호		
[] 배출가스저감장치 []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		
반납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	소유자 성명	연락처(전화번호)
	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번호	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모델명
	차대번호	장치 부착(개조) 연월일
	소유자 주소	
반납 사유 ([]에 √ 표시)	[]폐차 또는 폐기 []수출 []사고·재해·도난, []천연가스버스 대차 []저공해차 대차 []기타 ()	
반납 내용 ([]에 √ 표시)	반납 일시	반납 장소
	반납 장치 제작사명	반납 방법 [] 현물 [] 금전
	반납 장치명 및 부품종류: [] 매연여과 장치(DPF) 및 [] 자기진단 장치 [] 산화촉매장치(DOC) [] 저공해엔진([] 베이퍼라이저/인젝터, [] 믹서/쓰로틀바디, [] 촉매, [] 엔진제어장치(ECU/ECM))	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.		
년 월 일		
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직인		